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10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3년 10월 15일

나. 의안번호 : 13-80

4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(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)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면서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임.

<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“질병·육아·가사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공무원”에서 “휴직 중인 공무원”로 변경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적용 범위를 조정함.
- (2) 안 제5조에서는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.
- (3) 안 제7조에서는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물품구매, 명절 선물 지급 등 후생복지사업 시행내용을 구체화함.
- (4) 안 제8조의2에서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명문화함.
- (5) 기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.

[검토의견]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.02.02 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조직의 업무 및 구성원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·운영되도록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